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115
----------	------

2024년 11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4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24. 5. 31. ~ 6. 28.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 27명)
- 2024. 7. 19.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7명 중 16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6명(남 8명, 여 8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4개국(※ 국명 가나다순)

네덜란드	1	대만	2	독일	1	미국	1
볼리비아	1	베트남	1	스위스	1	아르헨티나	1
오스트리아	1	일본	2	중국	1	카자흐스탄	1
콩고민주공화국	1	프랑스	1				

다. 향후일정(안)

- 2024.11월 말~12월 「2024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2항1)에 따라 2024년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16명의 후보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

-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제도¹⁾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 발전²⁾에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별도의 조례 없이 1958년부터 시행되어왔으나 1972년에 조례가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되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후보자 추천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방지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의 수여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서울시에 일정 기간 거주 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여’와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여³⁾’방식이 있음
- 현재까지 총 100개국 932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으며, 일반수여 580명, 특별수여 184명, 그 외 국제대회 참석 등으로 1958년부터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서울시의 위상 제고, 경제발전, 과학·기술 분야 선진기술 도입 공헌 등

3)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1990년까지 한시적 기간에 받은 수여자가 168명임(붙임1참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방식 >

① 일반수여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자
- 추천 :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
- 선발 및 수여절차

명예시민 추천공모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조례 제4조 제1항) → 시의회 동의 (조례 제4조 제2항) →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② 특별수여

- 대상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수여 : 선정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가능

- 그리고 이러한 명예시민에 선정되면 시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각종 행사에 초대받거나 시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혜택사항 >

- 시정참여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
- 행사초청 :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초청(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국제회의, 공연 등)
- 무료입장 : 시립미술관,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동물원-테마가든 등
- 시정소식 : 서울시 e뉴스레터, 시정 월간소식지 '서울사랑' 구독 등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명예시민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후보자 공고 및 추천접수(2024.5.31.~6.28.)를 통해 추천된 총 27명을 종합 심사하여 시정공로가 인정되는 16명을 선정(2024. 7. 19.)함
- 선정된 16명은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해 매년 1,500건 이상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산구 장문로 자동차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여 자동차 폭발 사고를 예방⁴⁾하는 등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⁵⁾을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한 ‘명예시민 선정 절차’를 거쳤는바 그 적합성은 인정됨

- 서울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와 시정 관련 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시정 활동 기회를 부여하며, 아울러 서울시립 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같은 주요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다만,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명예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만의 특화된 혜택을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의 본래 취지인 국제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서울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많은 명예시민이 지속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제도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4) 2023년 12월 18일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53번지앞에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이 초동진화하여 대형사고를 방지한 사건

5)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붙임 1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

○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

(24.5.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특별수여)	시정유공 (일반수여)	국제대회 참석 등 (58'90년 동안 한시적수여)
총 계	932	184	580	168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70	38
명예시민증(소계) (1973~)	796	156	510	130
1973~1980	155	6	20	129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9	23	-
2019	34	15	19	-
2020	21	2	19	-
2021	13	4	9	-
2022	23	5	18	-
2023	17	2	15	-
2024	1	1	-	-

※ 국제대회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총 100개국 932명

(’24.5.31. 기준, 단위: 명)

대륙	국적		계 (단위명)	성별		대륙	국적		계 (단위명)	성별	
				남	여					남	여
아시아 (21개국) 241명	1	네팔	13	12	1	유럽 (32개국) 283명	1	그리스	9	7	2
	2	대만	15	15	0		2	네덜란드	11	7	4
	3	말레이시아	5	4	1		3	노르웨이	5	3	2
	4	몽골	10	7	3		4	덴마크	9	7	2
	5	방글라데시	3	1	2		5	독일	53	45	8
	6	베트남	9	8	1		6	러시아	14	11	3
	7	스리랑카	3	1	2		7	루마니아	3	2	1
	8	싱가포르	8	7	1		8	몰도바	1	0	1
	9	우즈베키스탄	9	5	4		9	몰타	1	0	1
	10	인도	7	5	2		10	벨기에	17	10	7
	11	인도네시아	9	7	2		11	벨라루스	1	1	0
	12	일본	45	39	6		12	불가리아	2	2	0
	13	중국	47	39	8		13	스웨덴	7	6	1
	14	카자흐스탄	10	9	1		14	스위스	5	3	2
	15	캄보디아	1	1	0		15	스코틀랜드	1	0	1
	16	키르기스스탄	4	2	2		16	스페인	11	7	4
	17	타히티	1	0	1		17	슬로바키아	1	1	0
	18	타지키스탄	2	2	0		18	아이슬란드	1	0	1
	19	태국	18	16	2		19	아일랜드	6	5	1
	20	파키스탄	6	5	1		20	아제르바이잔	2	1	1
	21	필리핀	16	12	4		21	에스토니아	2	1	1
중동 (9개국) 26명	1	사우디아라비아	7	7	0	22	영국	32	22	10	
	2	아랍에미리트	4	3	1	23	오스트리아	6	5	1	
	3	알제리	2	1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오만	1	1	0	25	이탈리아	15	11	4	
	5	요르단	2	2	0	26	조지아	2	2	0	
	6	이라크	3	3	0	27	체코	4	3	1	
	7	이란	2	2	0	28	터키	14	12	2	
	8	이스라엘	3	2	1	29	폴란드	6	4	2	
	9	이집트	2	1	1	30	프랑스	30	18	12	
중남미 (21개국) 82명	1	과테말라	2	1	1	31	핀란드	4	3	1	
	2	도미니카	2	1	1	32	헝가리	6	6	0	
	3	멕시코	16	13	3	북미 (2개국) 229명	1	미국	209	166	43
	4	바하마	1	0	1		2	캐나다	21	15	6
	5	베네수엘라	2	0	2	아프리카 (12개국) 45명	1	가나	2	2	0
	6	벨리즈	1	0	1		2	나이지리아	8	7	1
	7	볼리비아	2	0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0
	8	브라질	8	6	2		4	레소토	1	1	0
	9	아르헨티나	4	2	2		5	세네갈	2	2	0
	10	에콰도르	1	0	1		6	수단	11	11	0
	11	엘살바도르	1	1	0		7	앙골라	3	2	1
	12	온두라스	2	1	1		8	에티오피아	4	4	0
	13	우루과이	1	0	1		9	차드	1	1	0
	14	칠레	6	5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5	코스타리카	6	4	2		11	콩고	3	3	0
	16	콜롬비아	11	8	3		12	탄자니아	2	2	0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오세아니아 (3개국) 25명	1	뉴질랜드	11	10	1
	18	파나마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19	파라과이	1	0	1		3	호주	13	8	5
	20	페루	12	10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주요 명예시민 활용사례

〈국제행사 및 회의 참여〉

-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행사 한국어 사회('23.6.17) : 굽타 아비셰크(라키)('22년 명예시민 인도)
- ▶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포럼」 명예시민 초청('23.2.14) : 슈산트 사하스트라부떼 등 총 15명 참석
-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행사 한국어 사회('22.10.22) : 줄리안 퀴타르트('20년 명예시민, 벨기에)
- ▶ 「CAC 글로벌 서밋 2020」 패널 참여('20.6.1) : 수잔 사키아('19년 명예시민, 네팔)

〈위원회 참여〉

-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 난시 모니카('16 명예시민, 볼리비아), 리고베르토 반타 주니어('18 명예시민, 필리핀) 등 7명
- ▶ 서울국제경제지문단(SIBAC) &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단(FIAC)
 - 제프리 존스('20 명예시민, 미국), 발라카 니야지('20 명예시민, 인도) 등 15명
-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 '17년 심사위원 : 엘리자베뜨 사바날('16 명예시민, 프랑스 국립극동 연구원 서울 분원장)
 - '18년 심사위원 : 오리 피에르('17 명예시민, 서울 프랑수학교 교사)
 - '21년 심사위원 : 카를로스 고리토('20 명예시민, 주한브라질대사관 교육담당관)
 - '22년 심사위원 : 보키예프 아흐로르존('21 명예시민, 회사원)
 - '23년 심사위원 : 아이엔요 티타('22 명예시민, 고려대 연구교수)
 - '24년 심사위원 : 캐서린 앤 코르테지('23 명예시민,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장
아마도바 라할('23 명예시민, 큐레이터)

〈기타 시정 참여 등〉

- ▶ 서울사랑 잡지 인터뷰(외국인 주민 분야 대표)
 - 니드르베코바 굴사이르('22년 명예시민, 키르기스스탄) ※ 계묘년 신년 특집(2023년 1월호)
 - 보키예프 아흐로르존('21년 명예시민, 타지키스탄) ※ 민선 8기 출범 기념 특집(2022년 7월호)
- ▶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위원회 할랄관광 관련 지문
 - 칼리드 이스마일('20년 명예시민, 말레이시아)
- ▶ 공정여행 캠페인 관련 사업 지문 : 카트린 거마이어('20년 명예시민, 프랑스)
- ▶ 2024년 관공의 날 행사 토크콘서트 패널 : 아마도바 라할('23년 명예시민, 아제르바이잔)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2115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24. 5. 31 ~ 6. 28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 27명)
- 2024. 7. 19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7명 중 16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6명(남 8명, 여 8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4개국(※ 국명 가나다순)

네덜란드	1	대만	2	독일	1	미국	1
볼리비아	1	베트남	1	스위스	1	아르헨티나	1
오스트리아	1	일본	2	중국	1	카자흐스탄	1
콩고민주공화국	1	프랑스	1				

다. 향후일정(안)

- 2024.11월 말~12월 「2024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이병진 (☎ 2133-5288)